

# 투자자문계약서

XXXXX 고객님

(계약일 : 20XX년 XX월 XX일)

# 투자자문계약서

XXXXX(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 제 3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고객과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내용은 <별지1> 세부계약조건에 따른다.

1. 장, 단기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 제 4 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별지1> 세부계약조건에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제 5 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전자방식,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 제 6 조 (투자자문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1>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 ② 기본수수료는 <별지1> 세부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별지1>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 ③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1>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기본수수료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 ⑥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⑦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 제 7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 8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한다.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9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1>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 15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고객의 계좌에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

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제 16 조(적합성원칙)**

① 회사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자문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제2조 투자자문의 대상)
  - 가. 일반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 나. 재산상황
  -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2. 그 밖에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한 자문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가. 일반투자자의 연령
  - 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
  -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③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한 경험
  6. 연령
- ④ 일반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한 후 자문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있다.

**제 17 조(적정성원칙)**

① 회사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자문계약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린다.

**제 18 조(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투자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투자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

한다)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금융투자상품

- 1)상품의 내용
- 2)투자에 따른 위험
- 3)회사가 정하는 위험등급
- 4)그 밖에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 계약의 해지, 해제
  - 증권의 환매 및 매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

**제 19 조(금융투자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회사가 금융투자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20 조(회사의 영업행위준칙 등)**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1.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 2.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 3. 그 밖에 고객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는 사항
    - 가.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 나. 가목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 다. 고객의 금융상품 취득, 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사실

**제 21 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1>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2 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6 조 (관계법규등 준용)**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고객)

고객명 : XXXXX

대표이사 : (인)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회사)

회사명 : 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광현 (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4층

사업자등록번호 : 204-81-85764

<별지>

##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XX년 XX월 XX일~ 20XX년 XX월 XX일
2. 투자자문재산 :
3. 투자자문수수료 :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수수료 : 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부가세별도
  - 성과수수료 :
4. 자문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 지급 시기 : 3개월 분기 단위로 후취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1차: 20XX/XX/XX, 2차: 220XX/XX/XX, 3차: 20XX/XX/XX, 4차: 20XX/XX/XX)
  - 수수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3-XXXXXX (계좌명: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5. 투자자문담당자 :
6.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 주 소 :
  - 전 화 :
  - E-mail :
7. 기타 합의 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